

제279회 시의회 임시회
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2018. 4. 5.(목) 10:00

「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」

# 변경실시협약(안) 보고

일 시 : 2018. 4. 5.(목) 10:00

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
안 건 :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 
변경실시협약(안) 보고

안전총괄본부

#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」에 따른 용마터널 변경실시협약(안)에 대한 보고임

## 1 사업개요

- 사업규모 : 왕복 4차로, 연장 3.57km
- 사업방식 : BTO ('03.08.12 실시협약 체결)
- 총사업비 : 1,172억원('01.5 불변가) / 운영 : '14.11.21~'44.11.20 (30년)
- 통행료 : 1,500원 (소형차 기준)
- 사업시행자 : 용마터널(주) - 발해인프라투자회사, SK건설, 대림산업,  
롯데건설, 동부건설, 원하종합건설

## 2 추진경위

- '14.11.10 : 최초 통행료 시의회 의견청취  
< 의견 청취시 제시된 부대의견 >

- ▶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 최소화
- ▶ 3년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개선  
- 사업수익율 인하, 협약교통량 조정, 초과수입 환수 등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
- ▶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, 3년 시점에 추진결과 보고

- '14.11.21 : 준공 및 운영 개시 ※ '09.11.21 : 공사착수
- '15.07.29 :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(사업시행자→서울시)
- '16.07~12 :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(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)
- '17.05~06 :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TF 운영

- `17.07~11 : 협상 완료
- `17.11.21 : 최초통행료 관련 부대의견에 대한 시의회 업무보고
- `17.12.05/06 : 변경실시협약(안) 심사·검토 의뢰(계약심사단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)
  - `18.1.1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

〈 검토의견 〉

- 변경실시협약(안)에 대해 민간투자법 취지 및 서울시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,
  -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합의내용이 타당하며, 변경실시협약(안)에 적절히 반영됨.
  - 공유이익 사용방안은 PIMAC 제시안보다 서울시에 유리하게 적용하였음.

- `18.2.01 계약심사단 심사 완료

〈 심사의견 〉

- 변경실시협약(안)의 법률적·재무적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,
  - 초과수입 환수조건 변경 관련,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수정 권고
  -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협약 변경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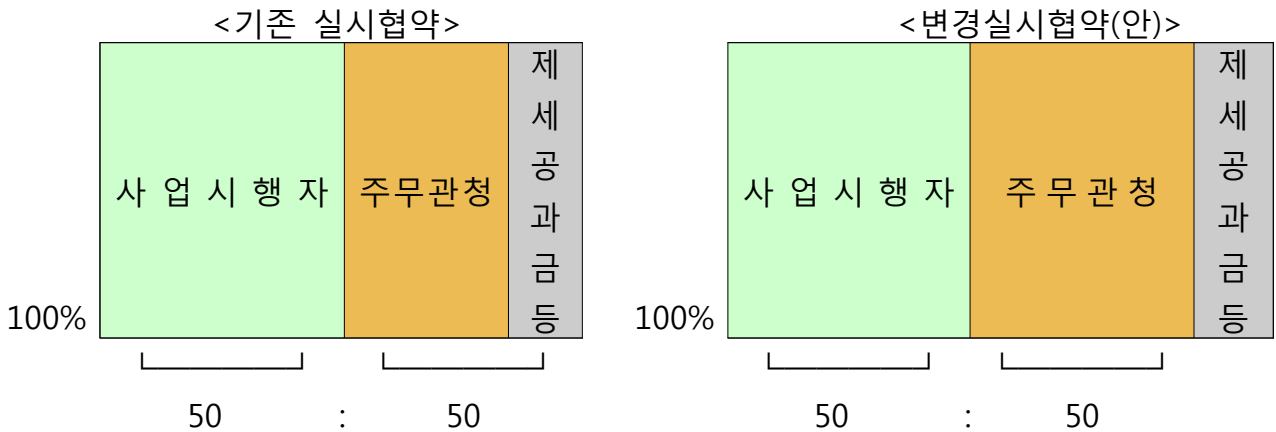
- `18.02.26 :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회신(사업시행자→서울시)
  - 기존 합의결과에 따라 변경협약체결 요청

### 3

## 실시협약 변경 내용

#### □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(실시협약 제2조, 제39조)

- 주무관청 환수분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불리하였던 환수조건을 전체 수입에서 차감 후 환수하도록 개선함.



#### □ 총사업비, 운영비 변경(실시협약 제26조, 제37조, 부록2, 부록6)

- 준공당시 미확정되었던 오염저감설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, 운영비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함.

구 분	기존 실시협약	변경 실시협약(안)	비고
총사업비	1,172억 원	1,181억 원	9억 원 ↑
운영비	830억 원	847억 원	17억 원 ↑

#### □ 기준통행료 및 사업수익률 인하 (실시협약 제30조, 부록4, 부록5, 부록7)

- 선순위 차입금 금리 인하(7.5%→3.5%)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한 결과, 통행료(소형차기준, 불변가)가 1,019원→1,000원으로 인하되고 이에 따라 사업수익률이 6.59%에서 6.25%로 하락함.

□ **오타자 수정 (실시협약 제38조)**

- **협약내용 변경 없이, 중복된 문구가 있어 삭제함.**

기존실시협약	변경실시협약(안)
제 38 조 (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)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영위할 영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.	제 38 조 (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)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<del>영위</del> 할 영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.

□ **문서의 우선순위 개선(실시협약 제66조)**

- **기존 협약에서 본 협약의 해석기준으로 본협약이 포함되어 논리적 모순이 있어, 해석기준에서 본협약을 삭제하여 해석 기준의 순위를 “1.민간투자법 및 시행령, 2.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”으로 변경함.**

기존실시협약	변경실시협약(안)
제66조 문서의 우선 순위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. 1.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2. 본 협약 3.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	제66조 문서의 우선 순위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간 <del>에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이 우선하며, 본 협약의 해석상 모호함이 나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는</del>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. 1.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<del>2. 본 협약</del> 3.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

## 4

## 추진 계획

- '18.4월~ : 시의회 보고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